

# 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규정

제정 : 2012.7.1

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소재지)

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## 제3조(업무)

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임상 및 해부학 실습 지원을 통하여 의학기술 향상과 더불어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신의 수급, 방부처리 및 관리 등 해부학 실습 지원
2. 시신기증 홍보 및 상담
3. 유가족 및 봉안당 관리
4. 시신의 화장 기획 및 진행
5. 의학계열 기초 및 임상실습 지원
6. 위 각 호와 관련된 기타의 업무

## 제4조(센터장)

①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·감독하기 위하여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, 센터장은 제6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기초하여 센터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전항의 센터장은 센터운용능력 및 관련분야의 지식이 있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## 제5조(직원)

본 센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 제6조(위원회의 설치)

센터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## 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, 한의과대학,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할 수 있는 교원 각 1인 및 직원 각 1인을 선정하여 위원으로 임명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직원 중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.

## 제8조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와 관련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## 제9조(위원회의 회의)

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10조(예산)

본 센터의 재정은 교비 예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.

제11조(보칙)

본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